대전보건대학교 시설물 관리 규정

2011. 07. 19. 최초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6. 11. 16.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제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학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점검,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대학 전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 설비, 환경설비 및 기타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3. “건물”이라 함은 본 대학의 부지 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축조된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4.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 분계점으로 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단, 전기사용 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5.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를 말한다.
6. “기계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에 설치된 냉·난방, 위생, 가스(집합장치 및 배관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 한한다) 자동제어설비를 말한다.
7. “소방설비”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8. “환경설비”라 함은 오수처리시설, 폐수집합시설, 소각시설,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9. “시설물 보수자”라 함은 시설물 관리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4조(주관부서) 시설물 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 관리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4.01.>

1.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실시
2. 시설물의 이력 관리

제5조(관련부서) 시설물 관리 책임은 해당 시설 사용 부서장 또는 학과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개정 2016.04.01.>

1. 사용시설물의 안전관리
2. 시설물 내·외부의 위험요소 제거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 요소 제거 활동
3. 시설물 내부의 기계기구(실험·실습장비 포함)운영 활동

제6조(관리의 책임구분) ①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배정받은 공간을 관리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실 관리책임은 그 실의 상위자가 정이 되고 차상위자는 부가 되며, 학과에 배정된 실은 학과장이 정이 되고, 조교가 부가 된다. 단, 실험·실습실은 담당 교수가 정이 되고 조교는 부가 되며, 학생자치시설과 복지시설은 관할 부서장이 정이 되고 담당자는 부가 되며, 교수연구실은 실을 배정받은 교수가 정이 된다.

제3장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시설물 관리

제7조(시설유지 및 보수계획) 교육시설 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신축 건물 완공 후 해당분야 주관부서는 그 건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1.>

제9조(설치 및 보수 절차) ①신축 건물 준공 후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보수 요청서를 시설주관부서로 제출하며, 시설주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 설계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②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본 대학 시설물에 관련된 기계설비, 장비(냉·난방기 포함)운영, 전기 수전 설비, 전기운영, 청소, 위생(소독), 방범, 시설영선 등의 제반업무는 직영운영 또는 용역운영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기록관리) ①주관부서는 별지1의 시설물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②시설물 주관부서는 주기적으로 시설물 상황(구조물, 전기, 수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04.01.>
③각종 시설물에 법정으로 선임된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안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이력 관리) ①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집행하였을 경우 시설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단, 본 대학 직원이 자체 보수한 것은 제외한다.
②시설물 관리대장의 이력 관리를 참조하여 차기년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2조(화재예방 및 소방관리) ①본 대학 총괄 소방계획 및 소방시설의 관리는 시설관리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개정 2016.04.01.>
②각 건물 소방관리 총괄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 각 건물 사용 부서장 및 학과장은 해당실의 안전관리자가 된다.<개정 2016.04.01.>
③각 실별 안전관리자는 해당실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각종 소방시설 및 기구를 점검하여 소방시설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통보 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4.01.>
④대학에 관련된 시설에서는 취사도구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도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반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주관부서에서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04.01.>
⑤기타 각 실별 안전관리자는 해당 부서 각 직원 및 교수, 조교에게 항상 화재예방에 대해 주의를 주지 시켜야 한다.<개정 2016.04.01.>

제13조(전기 및 통신설비 시설관리) ①각 실 부서장 및 학과장은 각 실내의 불법적인 배선 및 증설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1.>
②시설의 확인 및 점검은 각 시설사용 부서장 및 학과장이 실시하고 변경, 교체, 증설, 보수 등은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개정 2016.04.01.>

제14조(기타 시설관리) 각 부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 건물 내·외부의 위험요소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제4장 교육시설 환경개선 심의 조정절차

제15조(교육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심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심의는 대전보건대학교 교육시설 및 기자재 심의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자체평가 절차

제16조(자체평가 및 개선) ①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②교육환경개선 지원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개선 지원업무 평가 지침을 준용한다.

제6장 공간배정 및 조정절차

제17조(공간배정 및 조정)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반시설 배치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삭제 <2026.11.16.>

제18조 삭제 <2026.11.16.>

제8장 시설물 대관 절차

제19조(시설물 대관 및 관리)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교내 대관 시설물 관리 및 대여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장애인시설 관리 절차 <신설 2026.11.16.>

제20조(장애인시설관리)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신설 2026.11.16.>

부 칙

①(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준거하여야 하며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 설 물 관 리 대 장

담 당	팀 장	처 장	결재

□점검일자 :
□점검분야 :
□점검담당 :

시설물(실)명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한)결과	비고